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8. 21.(금)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1차 및 제42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40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속기록과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명예훼손의 우려와 인사관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적용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중 <의결안건 라>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43-19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및 동법시행령 [별표8]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5월 21일 위원회에 개정안을 보고드린바 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임의적인 조정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과징금 산정시 지금 현행은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과징금”에서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고시 개정은 나중에 법제처 심사를 받으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법제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시 개정 관련된 심사는 간략히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심사를 마친 이후 관보에 게재되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가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제처 심사를 받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43-19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에 있어서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경과는 아랫부분에 지난 6월 11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보류한바 있으며, 또한 7월 16일 제37차 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을 보류한바 있으며 그때 당시에 2주간의 기간을 주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이행토록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결과를 <붙임 1>과 같이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붙임 1>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조사결과는 크게 보면 2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미 두 번에 걸쳐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고, 4쪽에 보시면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시면 시정조치(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전에 보상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의결하지 않고 연기한 것이니까 그 보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면 <붙임 1>에 보시면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 손해배상 이행결과를 보고해 온 내용을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기준으로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간의 요금할인액과의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기준 하에서 심결대상 민원인 2,186건을 포함해서 총 약 28,000건에 대해서 현금 보상하거나 또는 금년 8월부터 요금청구분에서 요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총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심결 대상 민원 중에서 그 차액이 발생한 고객은 7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시행을 하였으며, 전체 대상자 중에서 차액이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8 월부터 요금청구분에서 요금을 감액하는 형태로 지금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어서 아까 시정조치(안)를 말씀하려다가 마셨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면 다시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치(안)으로서는 먼저 시정명령에 있어서 에스케이텔링크(주)에 대하여 위법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행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는 5쪽의 관련규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2가지의 위반행위에 있어서 먼저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반내용과 정도, 위반건수 그리고 이용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이 10개월이므로 기준금액에 20%를 필수적으로 가중하여 최종적으로는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업무처리 개선명령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결을 미루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도 적시되어 있다시피 '이용자 피해 회복 여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상이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금지행위 관련 규정, 그리고 그것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제재하는 이런 행위들이 위반, 조사, 제재 이것이 늘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자 피해 회복, 구제입니다. 저희가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자 피해 구제 내지는 이용자 피해 회복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 안건을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위반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 피해가 회복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 이번 심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애초의 이용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개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사업자 쪽에서도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조정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보상을 보니까 위반한 2,186건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2만여 건에 대해서 보상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금년 8월 요금청구 분부터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해 주거나 아니면 요금할인을 통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기존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6,000여건에 대해서는 요금감액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단 이용자 개개인들이 법적절차를 따로 밟아서 피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이 4억원인데 필수적 가중 20%는 무엇이지요? 필수적 가중한 이유가...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10개월 동안의 위반기간에 대해 20%를 가중한 것입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0%지만 12개월까지는 20%를 필수적으로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에스케이텔링크(주)가 피해보상에 투입하는 재원이 11억원입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해서 11억원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하면 11억원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번 시정조치(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인 것은 맞지만 과징금을 가능한 한 감액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이런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43-19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동 고시 안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분담금 징수제도의 논리적 체계성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장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지난 7월 2일 위원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과 사항은 지난 7월 2일 고시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7월 24일 기재부 부담금 심의를 완료하고,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 및 부처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8월 21일 규개위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의견으로는 방송협회에서 중앙지상파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인하폭을 확대해 달라는 것과 종편PP에 대한 징수율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징수율을 현행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상파 DMB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송광고매출액별로 징수율

구간을 설정하고 이러한 징수율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징수율은 방송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활동을 고려하고 또 변경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수점 아래를 기존 사업자가 불리해지지 않는 수준인 0.3%로 일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1,000억원 초과해서 1조원 이하 사업자는 4.3%, 그다음에 1%씩 낮아져서 50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0.3%로 기본징수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징수율은 이러한 기본징수율에 감경요인을 적용해서 산정하였고, 이러한 산정된 최종 징수율은 고시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결정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금 적자상태에 있지만 적자인 경우에도 분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종편·보도PP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여타 유료방송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하였고, 징수율은 과거 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1% 적용한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종편·보도PP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0.5%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적자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칙규정을 두어서 적용은 20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인 1년 후부터 징수율을 0.5%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담금 과·오납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분담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시 「국고금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법제처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8월 말까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건은 지난 7월 2일에 보고를 받았고, 그때는 보고안전이라 찬반 의견만 표시했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때 접수됐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종편·보도PP에 대해서 0.5%로 결정하되, 부칙규정을 두어 1년 후부터 징수율 0.5% 적용입니다. 그러면 금년의 경우에는 면제입니까, 유예입니까? 그리고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금년의 경우 면제나 유효라는 개념보다는 징수율을 0.5%로 결정했지만 다만 그 적용을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자에 대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올해는 징수를 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면제냐, 유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지금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시고….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법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칙규정을 두어서 2015년도 매출분에 대해서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 [별표]에 따른 징수율 적용 퍼센트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7월 2일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했던 취지는 무엇입니까?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는 전반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징수율 체계 자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꾼 부분과 또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분담금 면제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 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딱 2가지 경우만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논쟁을 했을 때, 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 하지 않습니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면제 규정의 논리적 체계성을 정비하고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에 근거하면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하고, 재무제표상

으로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2가지 조항에 종편·보도PP들이 해당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종편·보도PP가 해당 되지 않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지금 바뀐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7월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IPTV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IPTV에 대해서는 IPTV사업자의 가입수 증가나 매출액 증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0.5%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래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기재부에서 의결절차를 거쳤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미래부의 결정을 기재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면 기재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명확히 해야지요. 미래부에서 결정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IPTV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0.5% 징수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

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시행령에 있는 2가지 면제조항을 빼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IPTV에 대해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종편PP가 소규모 사업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별표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전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합니까?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틀렸습니다. 부과 기준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입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SO나 IPTV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이고, 지상파와 종편은 방송광고매출액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3개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으로 어느 정도 납부하는지 아십니까? 징수율을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사업자가 1% 냅니다. 매출액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자들이 2.3%를 냅니다. 매출액 200억원 초과는 2.8%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종편의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IPTV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시장 영향력은 가입자와 매출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종편들의 시장 영향력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광고매출액이나 시청률, 시청점유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미래부는 시행령 정비하고,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에 따라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만 안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습니까? 기준에 맞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사실상 미래부의 IPTV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면제인 3년 이후에 징수율 0%를 통해서 3년 동안 추가면제를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종편 관련해서는 3년 동안 면제해 왔고 그런 면제기간에서 차이가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2015년도 매출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콘텐츠 투자에 대한 측면이나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해서 1년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방통위가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1년 더, 1년 이후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의 정책적 판단, 좀 더 법적으로 보면 시행령이 고시보다는 상위입니다. 그때의 취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종편·보도PP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자.' 이것이 합의

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 시행령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고시의 부칙을 통해 종편·보도PP에 대해서 1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한다면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재량권을 넘어선 결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종편·보도PP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규정을 두어 1년 후인 '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징수율 0.5% 적용'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는 답변할 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감이 없는 듯하게 들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제가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령 개정 취지 자체는..., 지금까지 미래부 소관이든 방통위 소관이든 과거에 징수율 0%라는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한 징수율을 유지해 온 것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법적 체계를 좀 더 정비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송사업자가 적자 시현이 되든 안 되든, '징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든 다 받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과도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전부 다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무처에서 정리한 것처럼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시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IPTV, 홈쇼핑사업자와 종편을 비교하셨는데 그것이 업력이나 사업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 사업자의 공익성, 영리성 측면의 성격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홈쇼핑사업자와 IPTV 사업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편·보도PP인 경우에도 시행시기가 똑같아야 하고, 징수율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편·보도PP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해서 0.5%로 징수를 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타 사업자와 형평성이 결여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반복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 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부분들은 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 않고, 업력이라는 부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행령 개정할 때 분명히 개정 시행령에서 위성, IPTV는 사업 초기 3년간 면제한다는 규정을, 즉 업력을 기준으로 한 면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발언 중에 '부칙규정을 두어 1년 후부터' 이 부분을 빼자고 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3페이지 하단에 있는 '다

만 그 단서 부분들 2줄을 다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추가로 말씀드리면 업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작 시기뿐 아니라 IPTV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와 IPTV서비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편과 다른 측면, 그래서 IPTV서비스는 그 주된 사업자와 다른 사업이 결합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다만 종편과 IPTV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적자인 상태, 종편도 적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부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다만 그 시행시기만을 유예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목소리가 작은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논리가 약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도 면이 안 서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지적은 다 나왔고, 저는 종편·보도PP, 특히 종편이 신생 방송사이기 때문에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종편이 우리나라에서 신생매체냐? 역사적으로도 뿌리 깊은 미디어그룹의 구성매체입니다. 광고영업도 그래서 급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아래에서 채널번호도 앞에 다 배정을 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연 그런 방송사가 신생매체로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난 뒤에 징수율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또 1년 유예를 뒤서 한 번 더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안건이 정말 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 0.5%, 이것도 근거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세월호 참사로 모두 다 어렵다고 하지만, 종편·보도PP의 경우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사업의 외형이 급성장해 왔습니다. 작년에 종편 4사, 특히 종편 2사 몇 퍼센트 이상 성장했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총 매출액은 30% 정도 성장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32% 이상 급성장해 왔는데 방송시장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입니다. 꼭 흑자로 전환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느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방송사 경영의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 다른 방송사가 내놓은 기금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방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비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요? 특혜였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백번 양보해서 3년간 유예했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징수를 해야 합니다. 1년 유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시행하는 데 완충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뭘니까? 도무지 논리적 근거,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징수율 0.5% 적용하자? '영업이 어려우니까,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냥 봐 주자', '적자를 감안해서 0.5%로 하자' 이런 것이 원칙이 있는 행정행위냐 하는 의문을 낳습니다. 다시는 특정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생

가지 않고, 국민 여론층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안건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총매출액은 32% 증가 했지만, 분담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은 3% 증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0.5%로 한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예전에 SO, 위성방송에서 최초 분담금 징수할 때 1%였는데 그때는 흑자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자상태이므로 0.5%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봐서 0.5%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논의 되어 왔습니다만 ‘서로 간의 시각의 차이가 원칙적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방송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에 아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 투자 규모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상파부터 SO, 위성방송, IPTV, 종편까지 각 방송매체가 신규로 론칭을 할 때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일정 기간 유예를 해서 면제해 주고, 또 면제기간인 3년이 지나고서도 0%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면제 상태로 계속 해 주는 관행을 거쳐 왔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 일정한 기간이 걸리고,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제대로 궤도에 올리기 위한 일정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동안 SO와 모든 방송 플랫폼사업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편은 지금 아시다시피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적자상태에서 허덕이고 있고, 물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한 허가조건도 수행하지 못할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플랫폼사업자에게 6년간의 기본적인 면제기간이 다 주어졌었고, 그래서 종편에게만 갑자기 3년 면제후 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종편이 흑자상태로 넘어섰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했을 때는 사업체들이 흑자로 전환되고 난 뒤에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비추어볼 때 종편에 대한 징수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절충해서, 고시 자체를 개정하더라도 1년 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예고해 주고 내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된 이 안건에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7월 2일에 보고를 받을 때도 의견이 나뉘었는데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

해서 이 고시 개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바로 적용하여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015년 방송광고매출액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결한 것처럼 종편에 대해서 콘텐츠 투자가 2014년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부족하게 이루어져서 부족한 콘텐츠 투자를 올해 콘텐츠 투자에 합쳐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져서 종편이 원래 설립 취지대로 방송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 징수하는 것과 비록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편·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다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정들을 감안해서 시행을 내년, 즉 2015년 방송광고매출액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 둘로 갈리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면….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의견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면제기준들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 전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오늘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종편·보도PP에 대해서 1년간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이 단서조항, 이 2줄 이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의결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징수율 현행 유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상파 징수율이 그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보고한 대로….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당초대로 인하시킨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성방송 이야기도 나오고 홈쇼핑, IPTV사업자도 나왔는데 홈쇼핑, 위성방송은 말할 것도 없지만 IPTV사업자가 통신사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IPTV 사업만 보면 분명히 적자라서 우리 방통위가 그것이 적절 하나,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통신사 전체로 보면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성, 공공성이나 보도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질 수 있을텐데 미래부가 관장하는 사업자와 저희가 소관하는 지상파사업자와 종편·보도PP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지상파인 경우에도 지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과거의 징수율보다 하향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편·보도PP인 경우에도 그런 취지에서 어려

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왜 징수를 지금 안 하고 1년 뒤로 유예를 하느냐, 왜 면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지상파에 대해서 징수율을 하향조정해 주는 맥락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견을 다 말씀하셨는데 꼭 반대한다고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사무국 입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분담금 고시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체계성을 갖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한다는 것도 하나의 큰 꼭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나 다른 쪽의 분담금 징수율 인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미래부의 IPTV도 당초보다는 완화된 수준인 0.5%로 최대한 방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하자는 측면에서 한 전체적인 취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에 종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방송산업의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징수를 하되, 일단 콘텐츠 투자나 그런 측면을 유도하기 위해 0.5%를 내년에 징수한다는 것은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를 했고 오늘도 의결단계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쉽게 잘 모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이나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칙에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본문에 대해서만 찬성하시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정도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반대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부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뜯어볼까요? 예를 들면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종편 4사 콘텐츠 투자의 목표치가 얼마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2014년의 경우에는...

○ 김재홍 상임위원

- 수백억원이고 JTBC는 1,000억원이 넘습니다.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예, 1,000억원이 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1% 걸으면 광고매출액 대비 얼마씩 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 2, 3억원일 것입니다. 수백억원, 1,000억원 콘텐츠 투자 목표치와 2, 3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어떻게 연계해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수익성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3억원 안팎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유예해 줌으로써 얼마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방송사업자들의 경영문제까지 책임지고 고려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고 안 걷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거주자가 자기 사업이 적자라고 아파트관리비를 안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낸 기금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송 인프라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금을 얼마씩 받아가지요? 한 푼도 안 내는 종편 4사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연간 얼마씩 받아가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매년 10억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0억원이상 받아갑니다. 그것이 면이 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권리와 영향력만 행사하고 그것이 방송사, 언론사로서 맞는 것입니까?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도 맞는 것입니까? 면이 안서는 일은 방송사업자들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2, 3억 방송통신발전기금 내고 명예로운 위치에서 시비를 털어버리고 정당하게 떳떳하게 방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칙조항을 보면 정말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원칙도 없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담금에 따른 징수가 종편에 2, 3억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0.5%했을 때 광고매출액을 다 감안했을 때는 10억원 정도, 9.7억원 정도 징수가 되는 것을 안 내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이러한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광고 외형이 300억원이면 1%면 3억원입니다. 0.5%면 1.5억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매출액 대비면, 무슨 10억, 9억원입니까?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전체 4사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광고매출액 대비이지 않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껏 해 봐야 3억원 안팎입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전체 4사를 합치면 9.7억원이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전체가 아니지요. 개별 방송사들의 부담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종편 시장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징수를 하는 원칙을 저희가 정해 놓고, 다만 2014년에는 여전히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적자를 낸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6년까지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율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년까지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1,000억원 이상의 적자였던 것을 감안해서 올해 징수율을 정해서 그 다음해부터 하겠다는 나름대로 절충적인 입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은 찬성이고 한쪽은 반대이고 이렇게 O, X 의견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편·보도PP에 대해서 징수율을 0.3%로 하고 금년부터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로 하고 2년이나 3년 뒤부터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념의 차이, 논리의 차이라기보다 결국에는 징수율 몇 퍼센트를 언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한 것 같으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은 찬성이고 어느 위원님은 반대이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무처의 안대로 이렇게….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인데 다만 김

재홍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부칙의 단서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의결을 하되, 두 분께서 부칙단서, 다만 '제5조제2항 및 [별표3]은 2015년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하여부터 시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신다고 하니 그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하여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는데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할 때 꼭 다수결로 다수의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각각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토론하고 논의해 보면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성 여부가 나올 텐데 그것에 바탕을 뒤서 의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봐 주었다. 그러면 징수 안 할 수 없게 되었다. 징수를 하기로 하자. 그런데 1년 뒤에 하자'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우스운 결정, 행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원칙과 투명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고시는 오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관보에 게재한 이후 8월 말 이전에 다 부과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시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되, 다만 김재홍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신 것으로 기재해 놓고 그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할 안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02분 】